|  |  |  |
| --- | --- | --- |
|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609호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가 2011년 10월 26일의 국무원 제177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다. 개정 후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를 공포하므로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11년 11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을 제고시키고 동물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료라 함은 공업화 가공, 제조를 통해 동물의 식용에 제공하는 제품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단일사료, 첨가제 혼합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농후사료 보충제가 포함된다.  이 조례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사료가공, 제조, 사용 과정에서 첨가한 소량 또는 미량의 물질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영양성 사료첨가제와 일반 사료첨가제가 포함된다.  사료원료 목록과 사료첨가제 품종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3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사료, 사료첨가제 관리를 책임진 부서(이하 사료관리부서라 함)는 본 행정구역의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감독관리메커니즘을 수립 및 건전히 하여 감독관리 업무의 실시를 보장한다.  **제5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 경영자는 품질안전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여 생산, 경영하는 사료, 사료첨가제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경영, 사용과정 중의 이 조례 위반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며, 사료, 사료첨가제 감독관리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장 심사확정 및 등기**  **제7조** 국가는 사료, 사료첨가제의 신제품 연구개발을 장려한다.  사료, 사료첨가제의 신제품 연구개발은 과학, 안전, 유효, 환경보호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한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을 생산에 투입하기 전에 연구개발자 또는 생산기업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심사 신청을 제출하고 동시에 당해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샘플과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주요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연구개발방법, 생산공정, 품질표준, 테스트방법, 검사보고, 안정성 시험보고, 환경영향보고 및 오염방지조치  (2)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테스트기관이 발급한 당해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사용효과, 잔류물 해소동태 및 독리학 안전성 평가보고서.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첨가목적, 사용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당해 사료첨가제 잔류물이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분석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샘플과 신청서류를 전국사료평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당해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사료평의위원회는 양식, 사료가공, 동물영양, 독리, 약리, 신진대사, 위생보건, 화공합성, 생물기술, 품질표준, 환경보호, 식품안전리스크평가 등 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국사료평의위원회는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에 대한 평의는 평의회의 형식을 취하며, 평의회의는 9명 이상의 전국사료평의위원회 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1~2명의 전국사료평의위원회 전문가 이외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으며, 평의에 참가한 전문가는 평의사항에 대한 표결권을 가진다. 평의회의는 평의의견과 회의기요를 형성하여 평의에 참가한 전문가의 심사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평의에 참가한 전문가는 법에 따라 공정, 공평하게 그 직책을 수행하고 평의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전국사료평의위원회는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샘플과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일 근무일 내에 평의결과를 작성하여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국사료평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이 관련 시험을 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얻고 평의시간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평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를 발급 시에는 동시에 그 직책권한에 따라 당해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품질표준도 공포해야 한다.  **제11조**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이 모니터링 기간에 처해 있는 경우 당해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생산 신청과 수입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3년이 지나도 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생산기업은 모니터링기간에 처해 있는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그 동물제품 품질안전에 대한 영향 등 정보를 수집하여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품질안전 상황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에 안전문제가 존재함을 실증한 경우에는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중국 내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나 수출국에서 이미 생산과 사용을 허가받은 사료, 사료첨가제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 대리기구에 의뢰하여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등기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당해 사료, 사료첨가제의 샘플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상표, 라벨 및 사용보급 상황  (2) 생산지 생산, 사용 허가증명서 및 생산지 이외의 기타 국가, 지역의 등기자료  (3) 주요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연구개발방법, 생산공정, 품지표준, 테스트방법, 검사보고, 안정성 시험보고, 환경영향보고 및 오염방지조치  (4)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시험기구에서 발급한 당해 사료, 사료첨가제의 사육효과, 잔류물 해소동태 및 독리학 안정성 평가보고서.  사료첨가제의 수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료첨가제의 첨가목적, 사용방법도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당해 사료첨가제 잔류물이 인체건강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이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의 평의절차에 따라 평의를 실시하고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중국 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수출국의 생산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사료, 사료첨가제를 처음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신청서류를 심사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된 경우 샘플을 지정한 기구에 넘겨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확인검사에 합격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10일 근무일 내에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발급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수입등기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에 사료, 사료첨가제 수출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료, 사료첨가제의 수입은 금지된다.  **제13조** 국가는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를 취득했거나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한, 신 화학물이 포함된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 신청인이 제출한, 그가 장악하고 있으나 피로하지 않은 시험데이터와 기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실시한다.  증서 발급일로부터 6년 내에 기타 신청인이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를 취득했거나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한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 항에서 규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 심사 또는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를 신청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심사 또는 등기를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기타 신청인이 스스로 취득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래의 상황은 제외하고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1) 공공이익에 필요한 경우  (2) 이미 해당 정보가 부당 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  **제3장 생산, 경영 및 사용**  **제14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을 설립 시에는 사료공업 발전규획과 산업정책에 부합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에 필요한 공장건물, 장비 및 창고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에 필요한 전직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3) 필요한 제품품질검사기구, 인원, 장비 및 품질관리 제도가 있어야 한다.  (4)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생산환경이 갖추어 져야 한다.  (5) 국가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는 오염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6)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안전관리규범에서 규정한 기타 요건.  **제15조**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생산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와 심사의견을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자료와 심사의견을 접수한 후 평의를 실시해야 하며, 평의결과에 따라 10일 근무일 내에 생산허가증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결정서 사본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에 송달해야 한다.  기타 사료생산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서면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10일 근무일 내에 생산허가증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은 생산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생산기업이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제품 허가번호를 발급한다.  **제17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규정과 관련 표준에 따라 구매한, 사료원료,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검증 또는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료생산기업이 사용제한을 받는 사료원료,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를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제한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공포한 사료원료 목록, 사료첨가제 품종목록 및 약물사료첨가제 품종목록 이외의 물질을 사료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은 그가 구매한, 사료원료,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명칭, 산지, 물량, 품질보장기간, 허가증명문건번호, 품질검사정보, 생산기업명칭 또는 납품회사의 명칭 및 연락방식, 입하일자 등을 여실하게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기간은 최저 2년이다.  **제18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은 제품품질표준과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한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안전관리규범 및 사료첨가제 안전사용규범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하며, 생산 과정에 대해 효율적인 컨트롤을 실시하고 아울러 생산기록과 제품의 샘플관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은 그가 생산한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한 제품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경우 제품품질검사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품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이거나 또는 제품품질검사합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출하 판매가 금지된다.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은 출하 판매하는 사료, 사료첨가제의 명칭, 물량, 생산일자, 생산 로트번호, 품질검사정보, 구매자 명칭 및 연락방식, 판매일자 등을 여실하게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기간은 최저 2년이다.  **제20조** 출하 판매한 사료, 사료첨가제는 포장을 해야 한다. 포장은 국가 안전, 위생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료생산기업이 직접 양식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료는 탱크차를 사용하여 운수할 수 있다. 탱크차는 국가 안전, 위생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탱크차에 이 조례 제21조 규정에 부합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쉽게 연소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료, 사료첨가제의 포장은 경고표지 또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보관운수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제21조** 사료, 사료첨가제의 포장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은 중문이나 필요한 부호로 제품의 명칭, 원료구성, 제품성분분석 보증치, 정미중량 또는 정미함량, 보관조건, 사용설명, 주의사항, 생산일자, 품질보장기간, 생산기업명칭 및 주소, 허가증명문건번호, 제품품질표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약물 사료첨가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란 문구를 표시하고 아울러 그 통용명칭, 함량 및 약효 해소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유 및 유제품 이외의 동물원성 사료는 "본 제품은 반추동물의 사육 금지"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제22조**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에 필요한 영업장소와 창고보관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사료, 사료첨가제 사용, 보관 등 지식을 구비한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3) 필요한 제품품질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제23조**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가 입하 시 제품라벨, 제품품질검사합격증 및 상응하는 허가증명문건을 심사해야 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는 사료, 사료첨가제를 개봉, 분리 포장하지 못하며,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한 재가공을 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못한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공포한 사료원료목록, 사료첨가제 품종목록 및 약물 사료첨가제 품종목록 이외의 기타 물질로 생산한 사료를 경영하지 못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는 제품 구입판매대장을 설치하여 구입, 판매제품의 명칭, 허가증명문건번호, 사양, 물량, 품질보증기간, 생산기업명칭 또는 납품회사의 명칭과 그 연락방식, 구입판매 시간 등을 여실하게 기록해야 한다. 구입판매대장 보존기간은 최저 2년이다.  **제24조** 중국에 수출하는 사료, 사료첨가제는 포장을 해야 하며, 포장은 중국의 안전, 위생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이 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중국에 수출하는 사료, 사료첨가제는 중국의 검사검역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서 법에 따라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포장과 라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포장과 라벨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된다.  해외기업은 직접 중국 내에서 사료, 사료첨가제를 판매할 수 없다. 해외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료, 사료첨가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판매기구를 설립하거나 또는 조건에 부합되는 중국 경내의 대리기구에 판매를 의뢰해야 한다.  **제25조** 양식업자는 제품 사용설명과 주의사항에 따라 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사료 또는 동물음료수에 사료첨가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사료첨가제 사용설명과 주의사항 요구에 부합되고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사료첨가제 안전사용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양식업자가 스스로 배합한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자체 배합사료 사용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대외에 자체 배합사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사용제한 물질을 사용하여 동물을 양식한 경우에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제한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료, 동물음료수 중에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과 인체에 직접적으로나 잠재적인 위해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상기 물질을 직접 양식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추동물 사료에 유 또는 유제품 이외의 동물원성 성분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6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안전지식 선전을 보강하여 양식업자의 품질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양식업자를 지도하여 안전, 합리적으로 사료, 사료첨가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사료, 사료첨가제를 사용하는 중에서 양식동물, 인체건강 또는 환경에 해로운 것이 증명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공포한다.  **제28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그가 생산한 사료, 사료첨가제가 양식동물, 인체건강에 해롭거나 기타 안전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산을 중지하고 경영자,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료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스스로 제품을 리콜해야 하며, 아울러 리콜과 통지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리콜 제품은 사료관리부서의 감독하에서 무해화 처리를 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가 그가 판매하는 사료, 사료첨가제에 전 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생산기업과 납품회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료관리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통시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양식업자가 그가 사용하는 사료, 사료첨가제에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납품회사에 통지하는 동시에 사료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경영, 사용을 금지한다.  제품라벨, 생산허가증, 제품품질표준, 제품품질검사합격증이 없는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 사용을 금지한다. 허가번호가 없는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경영, 사용을 금지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하지 못한 수입사료, 수입 사료첨가제 경영, 사용을 금지한다.  **제30조**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해 예방이나 동물의 질병치료 작용이 있는 설명이나 선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사료에 약물 사료첨가제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한 약물 사료첨가제의 작용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다.  **제31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직책권한에 따라 전국 또는 본 행정구역의 사료, 사료첨가제의 품질안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안전 조기경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32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사료, 사료첨가제 감독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료, 사료첨가제 감독 표본검사 테스트업무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가 지정한, 상응하는 기술조건을 구비한 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감독 표본검사는 요금을 수취하지 않는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살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직책권한에 따라 감독 표본검사 결과를 공포하며, 동시에 불량기록이 있는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 경영자 명단을 공포할 수 있다.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사료, 사료첨가제 감독관리 보관서류를 설치하여 일상 감독검사, 불법행위 조사처리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34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감독 검사 중에서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경영, 사용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2)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  (3) 불법 사료생산에 사용한 증거가 있는 사료원료와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불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한 원료, 불법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한 수단과 장비, 불법 생산, 경영, 사용한 사료, 사료첨가제를 차압, 압류  (4) 사료, 사료첨가제 불법 생산, 영업장소를 차압.  **제4장 법적 책임**  **제35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 또는 기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부서와 그 업무직원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36조** 거짓 자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방식을 취하여 허가증명문건을 취득한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관련 허가증명문건을 취소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신청인은 3년 내에 동일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신청하지 못한다. 사기방식으로 허가증명문건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7조** 허가증명문건을 모조, 위조 또는 매매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직책권한에 따라 관련 허가증명문건을 몰수하거나 회수말소, 취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38조** 생산허가증이 없이 사료, 사료첨가제를 생산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에서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 불법 생산한 제품, 불법 사료생산에 사용한 사료원료,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및 불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한 원료를 몰수하며, 불법 생산제품의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몰수하고 생산기업의 주요책임자와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은 10년 내에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못한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였으나 이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더 이상 구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료, 사료첨가제를 계속 생산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생산을 중지시키고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생산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였으나 제품 허가번호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를 생산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불법소득, 불법 생산한 제품과 불법 사료생산에 사용한 사료원료,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사료첨가제, 불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한 원료를 몰수하며, 기한부 제품 허가번호를 취득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불법 생산제품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생산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39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에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 불법 생산한 제품과 불법 사료생산에 사용한 사료원료,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그리고 불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한 원료를 몰수하며, 불법 생산제품의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가치 5배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관련 허가증명문건을 회수 말소하거나 취소하고 생산기업의 주요책임자와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은 10년 내에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1) 사용을 제한하는 사료원료,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로 사료를 생산하여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제한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공포한 사료 원료목록, 사료첨가제 품종목록, 약물 사료첨가제 품종목록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한 경우  (3)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 사료첨가제를 생산한 경우.  **제40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불법소득, 불법 생산한 제품과 불법 사료생산에 사용한 사료원료,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불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한 원료를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생산 중지를 명령하며, 증서발급기관에서 관련 허가증명문건을 회수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규정과 관련표준에 따라 구매한 사료원료,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한 원료에 대해 검증 또는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과정에서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한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안전관리규범과 사료첨가제 안전사용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생산한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해 제품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41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매, 생산, 판매기록제도 또는 제품의 샘플보관 관찰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불법소득, 불법 생산한 제품과 불법 사료생산에 사용한 사료원료, 단일사료, 사료첨가제, 약물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그리고 불법 사료첨가제 생산에 사용한 원료를 몰수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아울러 증서발급기관은 관련 허가증명문건을 회수 말소하거나 취소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판매한 사료, 사료첨가제에 제품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포장, 라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사인이 심각한 경우 불법소득과 불법 판매 제품을 몰수하거나 불법 판매한 제품 가치의 30%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이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료, 사료첨가제를 경영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에서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법소득과 불법 경영한 제품을 몰수하고 불법 경영제품의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 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영업집조를 회수 말소하게 한다.  **제43조**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과 불법 경영한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한 제품의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 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영업집조를 회수 말소하도록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1)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해 재가공을 하거나 기타 물질을 첨가한 경우  (2) 제품라벨, 생산허가증, 제품품질검사합격증이 없는 사료, 사료첨가제를 경영한 경우  (3) 제품 허가번호가 없는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를 경영한 경우  (4)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공포한 사료 원료목록, 사료첨가제 품종목록과 약물 사료첨가제 품종목록 이외의 물질로 생산한 사료를 경영한 경우  (5)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 또는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하지 못한 수입사료, 수입 사료첨가제, 그리고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 사료첨가제를 경영한 경우.  **제44조**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과 불법 경영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사료, 사료첨가제를 개봉, 분리 포장한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품 구입판매대장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경영하는 사료, 사료첨가제가 실효, 변질하거나 품질보증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45조** 이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한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해 생산기업이 스스로 리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리콜을 명령하고 아울러 생산기업의 리콜 제품에 무해화 처리 또는 소각을 감독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리콜 제품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증서발급기관에서 관련 허가증명문건을 회수 몰수하거나 취소한다. 생산기업이 리콜 제품에 대한 무해화 처리를 하거나 소각을 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대신 소각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기업이 부담한다.  경영자가 이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한 사료, 사료첨가제의 판매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판매중지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영업집조를 회수 말소하게 한다.  **제46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 경영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생산,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과 불법 생산, 경영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경영제품의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 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1) 생산, 경영 과정에서 비 사료, 비 사료첨가제를 사료, 사료첨가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모일종의 사료, 사료첨가제를 기타 종류의 사료, 사료첨가제로 사용한 경우  (2) 제품품질표준이 없거나 제품품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료, 사료첨가제를 생산, 경영한 경우  (3) 생산, 경영한 사료, 사료첨가제가 라벨의 표시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전 항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관련 허가증명문건을 회수 말소하거나 취소하며,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가 전 항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영업집조를 회수 말소하게 한다.  **제47조** 양식업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불법 사용한 제품과 불법 첨가물질을 몰수하고 단위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1) 사료, 시료첨가제 신제품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 또는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하지 못한 수입사료, 수입 사료첨가제를 사용한 경우  (2) 제품라벨, 생산허가증, 제품품질표준, 제품품질검사합격증이 없는 사료, 사료첨가제를 사용한 경우  (3) 제품 허가번호가 없는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를 생산한 경우  (4) 사료 또는 동물 음료수에 사료첨가제를 첨가할 때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한 사료첨가제 안전 사용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스스로 배합한 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한 자체 배합사료 사용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사용을 제한하는 물질로 동물을 양식함에 있어서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제한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반추동물 사료에 유 및 유제품 이외의 동물원성 성분을 첨가한 경우.  사료 또는 동물음료수에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과 인체에 직접적 또는 잠재적 위해가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상기 물질을 동물 양식에 직접 사용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금지물질을 사육한 동물에 대한 무해화 처리를 하도록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48조** 양식업자가 대외에 스스로 배합한 사료를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장 부 칙**  **제49조** 이 조례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사료원료란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광물질을 원천으로 사료 가공제조에 사용되지만 사료첨가제에 속하지 않는 사육물질을 가리킨다.  (2) 단일사료란 한 가지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광물질을 원천으로 사료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사료를 가리킨다.  (3) 첨가제 혼합사료란 2가지(종류) 또는 그 이상의 영양성 사료첨가제를 위주로 하고 캐리어나 희석제와 일정한 비율로 배합한 사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복합 혼합사료, 미량원소 혼합사료, 비타민 혼합사료가 포함된다.  (4) 농축사료란 주로 단백질, 광물질과 사료첨가제를 일정한 비례로 배합한 사료를 가리킨다.  (5) 배합사료란 양식동물의 영양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료원료와 사료첨가제를 일정한 비례로 배합한 사료를 가리킨다.  (6) 농후사료 보충제란 초식 동물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료원료와 사료첨가제를 일정한 비례로 배합한 사료를 가리킨다.  (7) 영양성 사료첨가제란 사료의 영양성분 보충을 위해 사료 중에 소량 또는 미량 물질을 첨가한 것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사료용 아미노산, 비타민, 광물질 미량원소, 효소제, 비단백질소 등이 포함된다.  (8) 일반 사료첨가제란 사료품질을 보장하고 사료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료 중에 첨가한 소량 또는 미량물질을 가리킨다.  (9) 약물 사료첨가제란 동물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 캐리어나 희석제를 첨가한 가축약물의 혼합물질을 가리킨다.  (10) 허가증명문건이란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서,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허가증,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제품 허가번호를 가리킨다.  **제50조** 약물 사료첨가제의 관리는 《가축약물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1조**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国务院令第609号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已经2011年10月26日国务院第177次常务会议修订通过，现将修订后的《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公布，自2012年5月1日起施行。  　　　　总理　温家宝　　　　　　　　　　　　　　　　　　　　　　　　 　二○一一年十一月三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对饲料、饲料添加剂的管理，提高饲料、饲料添加剂的质量，保障动物产品质量安全，维护公众健康，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所称饲料，是指经工业化加工、制作的供动物食用的产品，包括单一饲料、添加剂预混合饲料、浓缩饲料、配合饲料和精料补充料。  　本条例所称饲料添加剂，是指在饲料加工、制作、使用过程中添加的少量或者微量物质，包括营养性饲料添加剂和一般饲料添加剂。  　 饲料原料目录和饲料添加剂品种目录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并公布。  **第三条**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饲料、饲料添加剂的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饲料、饲料添加剂管理的部门（以下简称饲料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饲料、饲料添加剂的监督管理工作。  **第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统一领导本行政区域饲料、饲料添加剂的监督管理工作，建立健全监督管理机制，保障监督管理工作的开展。  **第五条**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经营者应当建立健全质量安全制度，对其生产、经营的饲料、饲料添加剂的质量安全负责。  **第六条**　任何组织或者个人有权举报在饲料、饲料添加剂生产、经营、使用过程中违反本条例的行为，有权对饲料、饲料添加剂监督管理工作提出意见和建议。    **第二章　审定和登记**  **第七条**　国家鼓励研制新饲料、新饲料添加剂。  　 研制新饲料、新饲料添加剂，应当遵循科学、安全、有效、环保的原则，保证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质量安全。  **第八条**　研制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投入生产前，研制者或者生产企业应当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提出审定申请，并提供该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样品和下列资料：  　 （一）名称、主要成分、理化性质、研制方法、生产工艺、质量标准、检测方法、检验报告、稳定性试验报告、环境影响报告和污染防治措施；  　 （二）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指定的试验机构出具的该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饲喂效果、残留消解动态以及毒理学安全性评价报告。  　 申请新饲料添加剂审定的，还应当说明该新饲料添加剂的添加目的、使用方法，并提供该饲料添加剂残留可能对人体健康造成影响的分析评价报告。  **第九条**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将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样品和申请资料交全国饲料评审委员会，对该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安全性、有效性及其对环境的影响进行评审。  　 全国饲料评审委员会由养殖、饲料加工、动物营养、毒理、药理、代谢、卫生、化工合成、生物技术、质量标准、环境保护、食品安全风险评估等方面的专家组成。全国饲料评审委员会对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评审采取评审会议的形式，评审会议应当有9名以上全国饲料评审委员会专家参加，根据需要也可以邀请1至2名全国饲料评审委员会专家以外的专家参加，参加评审的专家对评审事项具有表决权。评审会议应当形成评审意见和会议纪要，并由参加评审的专家审核签字；有不同意见的，应当注明。参加评审的专家应当依法公平、公正履行职责，对评审资料保密，存在回避事由的，应当主动回避。  　 全国饲料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样品和申请资料之日起9个月内出具评审结果并提交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但是，全国饲料评审委员会决定由申请人进行相关试验的，经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同意，评审时间可以延长3个月。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评审结果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是否核发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决定；决定不予核发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十条**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应当同时按照职责权限公布该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产品质量标准。  **第十一条**　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监测期为5年。新饲料、新饲料添加剂处于监测期的，不受理其他就该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生产申请和进口登记申请，但超过3年不投入生产的除外。  　 生产企业应当收集处于监测期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质量稳定性及其对动物产品质量安全的影响等信息，并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报告；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对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质量安全状况组织跟踪监测，证实其存在安全问题的，应当撤销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并予以公告。  **第十二条**　向中国出口中国境内尚未使用但出口国已经批准生产和使用的饲料、饲料添加剂的，应当委托中国境内代理机构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申请登记，并提供该饲料、饲料添加剂的样品和下列资料：  　（一）商标、标签和推广应用情况；  　（二）生产地批准生产、使用的证明和生产地以外其他国家、地区的登记资料；  　　（三）主要成分、理化性质、研制方法、生产工艺、质量标准、检测方法、检验报告、稳定性试验报告、环境影响报告和污染防治措施；  　　（四）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指定的试验机构出具的该饲料、饲料添加剂的饲喂效果、残留消解动态以及毒理学安全性评价报告。  　申请饲料添加剂进口登记的，还应当说明该饲料添加剂的添加目的、使用方法，并提供该饲料添加剂残留可能对人体健康造成影响的分析评价报告。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第九条规定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评审程序组织评审，并决定是否核发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  　首次向中国出口中国境内已经使用且出口国已经批准生产和使用的饲料、饲料添加剂的，应当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申请登记。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对申请资料进行审查；审查合格的，将样品交由指定的机构进行复核检测；复核检测合格的，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在10个工作日内核发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  　　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有效期为5年。进口登记证有效期满需要继续向中国出口饲料、饲料添加剂的，应当在有效期届满6个月前申请续展。  　禁止进口未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饲料、饲料添加剂。  **第十三条**　国家对已经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或者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含有新化合物的饲料、饲料添加剂的申请人提交的其自己所取得且未披露的试验数据和其他数据实施保护。  　自核发证书之日起6年内，对其他申请人未经已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或者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申请人同意，使用前款规定的数据申请新饲料、新饲料添加剂审定或者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的，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不予审定或者登记；但是，其他申请人提交其自己所取得的数据的除外。  　除下列情形外，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不得披露本条第一款规定的数据：  　（一）公共利益需要；  　（二）已采取措施确保该类信息不会被不正当地进行商业使用。    **第三章　生产、经营和使用**  **第十四条**　设立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符合饲料工业发展规划和产业政策，并具备下列条件：  　（一）有与生产饲料、饲料添加剂相适应的厂房、设备和仓储设施；  　　（二）有与生产饲料、饲料添加剂相适应的专职技术人员；  （三）有必要的产品质量检验机构、人员、设施和质量管理制度；  （四）有符合国家规定的安全、卫生要求的生产环境；  　　（五）有符合国家环境保护要求的污染防治措施；  　（六）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饲料、饲料添加剂质量安全管理规范规定的其他条件。  **第十五条**　申请设立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生产企业，申请人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进行书面审查和现场审核，并将相关资料和审查、审核意见上报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收到资料和审查、审核意见后应当组织评审，根据评审结果在10个工作日内作出是否核发生产许可证的决定，并将决定抄送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  　 申请设立其他饲料生产企业，申请人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进行书面审查；审查合格的，组织进行现场审核，并根据审核结果在10个工作日内作出是否核发生产许可证的决定。  　 申请人凭生产许可证办理工商登记手续。  　生产许可证有效期为5年。生产许可证有效期满需要继续生产饲料、饲料添加剂的，应当在有效期届满6个月前申请续展。  **第十六条**　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生产企业取得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的生产许可证后，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按照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核发相应的产品批准文号。  **第十七条**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按照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和有关标准，对采购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和用于饲料添加剂生产的原料进行查验或者检验。  　 饲料生产企业使用限制使用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生产饲料的，应当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限制性规定。禁止使用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的饲料原料目录、饲料添加剂品种目录和药物饲料添加剂品种目录以外的任何物质生产饲料。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如实记录采购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和用于饲料添加剂生产的原料的名称、产地、数量、保质期、许可证明文件编号、质量检验信息、生产企业名称或者供货者名称及其联系方式、进货日期等。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十八条**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按照产品质量标准以及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饲料、饲料添加剂质量安全管理规范和饲料添加剂安全使用规范组织生产，对生产过程实施有效控制并实行生产记录和产品留样观察制度。  **第十九条**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对生产的饲料、饲料添加剂进行产品质量检验；检验合格的，应当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未经产品质量检验、检验不合格或者未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的，不得出厂销售。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应当如实记录出厂销售的饲料、饲料添加剂的名称、数量、生产日期、生产批次、质量检验信息、购货者名称及其联系方式、销售日期等。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二十条**　出厂销售的饲料、饲料添加剂应当包装，包装应当符合国家有关安全、卫生的规定。  　饲料生产企业直接销售给养殖者的饲料可以使用罐装车运输。罐装车应当符合国家有关安全、卫生的规定，并随罐装车附具符合本条例第二十一条规定的标签。  　易燃或者其他特殊的饲料、饲料添加剂的包装应当有警示标志或者说明，并注明储运注意事项。  **第二十一条**　饲料、饲料添加剂的包装上应当附具标签。标签应当以中文或者适用符号标明产品名称、原料组成、产品成分分析保证值、净重或者净含量、贮存条件、使用说明、注意事项、生产日期、保质期、生产企业名称以及地址、许可证明文件编号和产品质量标准等。加入药物饲料添加剂的，还应当标明“加入药物饲料添加剂”字样，并标明其通用名称、含量和休药期。乳和乳制品以外的动物源性饲料，还应当标明“本产品不得饲喂反刍动物”字样。  **第二十二条**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应当符合下列条件：  　（一）有与经营饲料、饲料添加剂相适应的经营场所和仓储设施；  　（二）有具备饲料、饲料添加剂使用、贮存等知识的技术人员；  　（三）有必要的产品质量管理和安全管理制度。  **第二十三条**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进货时应当查验产品标签、产品质量检验合格证和相应的许可证明文件。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不得对饲料、饲料添加剂进行拆包、分装，不得对饲料、饲料添加剂进行再加工或者添加任何物质。  　 禁止经营用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的饲料原料目录、饲料添加剂品种目录和药物饲料添加剂品种目录以外的任何物质生产的饲料。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应当建立产品购销台账，如实记录购销产品的名称、许可证明文件编号、规格、数量、保质期、生产企业名称或者供货者名称及其联系方式、购销时间等。购销台账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二十四条**　向中国出口的饲料、饲料添加剂应当包装，包装应当符合中国有关安全、卫生的规定，并附具符合本条例第二十一条规定的标签。  　 向中国出口的饲料、饲料添加剂应当符合中国有关检验检疫的要求，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法实施检验检疫，并对其包装和标签进行核查。包装和标签不符合要求的，不得入境。  　 境外企业不得直接在中国销售饲料、饲料添加剂。境外企业在中国销售饲料、饲料添加剂的，应当依法在中国境内设立销售机构或者委托符合条件的中国境内代理机构销售。  **第二十五条**　养殖者应当按照产品使用说明和注意事项使用饲料。在饲料或者动物饮用水中添加饲料添加剂的，应当符合饲料添加剂使用说明和注意事项的要求，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饲料添加剂安全使用规范。  　 养殖者使用自行配制的饲料的，应当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自行配制饲料使用规范，并不得对外提供自行配制的饲料。  　 使用限制使用的物质养殖动物的，应当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限制性规定。禁止在饲料、动物饮用水中添加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禁用的物质以及对人体具有直接或者潜在危害的其他物质，或者直接使用上述物质养殖动物。禁止在反刍动物饲料中添加乳和乳制品以外的动物源性成分。  **第二十六条**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加强饲料、饲料添加剂质量安全知识的宣传，提高养殖者的质量安全意识，指导养殖者安全、合理使用饲料、饲料添加剂。  **第二十七条**　饲料、饲料添加剂在使用过程中被证实对养殖动物、人体健康或者环境有害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决定禁用并予以公布。  **第二十八条**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发现其生产的饲料、饲料添加剂对养殖动物、人体健康有害或者存在其他安全隐患的，应当立即停止生产，通知经营者、使用者，向饲料管理部门报告，主动召回产品，并记录召回和通知情况。召回的产品应当在饲料管理部门监督下予以无害化处理或者销毁。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发现其销售的饲料、饲料添加剂具有前款规定情形的，应当立即停止销售，通知生产企业、供货者和使用者，向饲料管理部门报告，并记录通知情况。  　养殖者发现其使用的饲料、饲料添加剂具有本条第一款规定情形的，应当立即停止使用，通知供货者，并向饲料管理部门报告。  **第二十九条**　禁止生产、经营、使用未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以及禁用的饲料、饲料添加剂。  　禁止经营、使用无产品标签、无生产许可证、无产品质量标准、无产品质量检验合格证的饲料、饲料添加剂。禁止经营、使用无产品批准文号的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禁止经营、使用未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进口饲料、进口饲料添加剂。  **第三十条**　禁止对饲料、饲料添加剂作具有预防或者治疗动物疾病作用的说明或者宣传。但是，饲料中添加药物饲料添加剂的，可以对所添加的药物饲料添加剂的作用加以说明。  **第三十一条**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按照职责权限对全国或者本行政区域饲料、饲料添加剂的质量安全状况进行监测，并根据监测情况发布饲料、饲料添加剂质量安全预警信息。  **第三十二条**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根据需要定期或者不定期组织实施饲料、饲料添加剂监督抽查；饲料、饲料添加剂监督抽查检测工作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指定的具有相应技术条件的机构承担。饲料、饲料添加剂监督抽查不得收费。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按照职责权限公布监督抽查结果，并可以公布具有不良记录的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经营者名单。  **第三十三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建立饲料、饲料添加剂监督管理档案，记录日常监督检查、违法行为查处等情况。  **第三十四条**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在监督检查中可以采取下列措施：  　（一）对饲料、饲料添加剂生产、经营、使用场所实施现场检查；  　（二）查阅、复制有关合同、票据、账簿和其他相关资料；  　　（三）查封、扣押有证据证明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用于违法生产饲料、饲料添加剂的工具、设施，违法生产、经营、使用的饲料、饲料添加剂；  　（四）查封违法生产、经营饲料、饲料添加剂的场所。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五条**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或者其他依照本条例规定行使监督管理权的部门及其工作人员，不履行本条例规定的职责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六条**　提供虚假的资料、样品或者采取其他欺骗方式取得许可证明文件的，由发证机关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申请人3年内不得就同一事项申请行政许可。以欺骗方式取得许可证明文件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三十七条**　假冒、伪造或者买卖许可证明文件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按照职责权限收缴或者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八条**　未取得生产许可证生产饲料、饲料添加剂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停止生产，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以及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违法生产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没收其生产设备，生产企业的主要负责人和直接负责的主管人员10年内不得从事饲料、饲料添加剂生产、经营活动。  　 已经取得生产许可证，但不再具备本条例第十四条规定的条件而继续生产饲料、饲料添加剂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停止生产、限期改正，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逾期不改正的，由发证机关吊销生产许可证。  　 已经取得生产许可证，但未取得产品批准文号而生产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停止生产，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以及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限期补办产品批准文号，并处违法生产的产品货值金额1倍以上3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生产许可证。  **第三十九条**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以及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违法生产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生产企业的主要负责人和直接负责的主管人员10年内不得从事饲料、饲料添加剂生产、经营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使用限制使用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生产饲料，不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限制性规定的；  　 （二）使用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的饲料原料目录、饲料添加剂品种目录和药物饲料添加剂品种目录以外的物质生产饲料的；  　 （三）生产未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或者禁用的饲料、饲料添加剂的。  **第四十条**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以及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生产，可以由发证机关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  　 （一） 不按照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规定和有关标准对采购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和用于饲料添加剂生产的原料进行查验或者检验的；  　 （二）饲料、饲料添加剂生产过程中不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饲料、饲料添加剂质量安全管理规范和饲料添加剂安全使用规范的；  　 （三）生产的饲料、饲料添加剂未经产品质量检验的。  **第四十一条**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不依照本条例规定实行采购、生产、销售记录制度或者产品留样观察制度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的产品和用于违法生产饲料的饲料原料、单一饲料、饲料添加剂、药物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以及用于违法生产饲料添加剂的原料，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并可以由发证机关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销售的饲料、饲料添加剂未附具产品质量检验合格证或者包装、标签不符合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没收违法所得和违法销售的产品，可以处违法销售的产品货值金额30%以下罚款。  **第四十二条**　不符合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条件经营饲料、饲料添加剂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没收违法所得和违法经营的产品，违法经营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经营，并通知工商行政管理部门，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第四十三条**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和违法经营的产品，违法经营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经营，并通知工商行政管理部门，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对饲料、饲料添加剂进行再加工或者添加物质的；  　（二） 经营无产品标签、无生产许可证、无产品质量检验合格证的饲料、饲料添加剂的；  　（三）经营无产品批准文号的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的；  　（四）经营用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的饲料原料目录、饲料添加剂品种目录和药物饲料添加剂品种目录以外的物质生产的饲料的；  　 （五） 经营未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或者未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进口饲料、进口饲料添加剂以及禁用的饲料、饲料添加剂的。  **第四十四条**　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和违法经营的产品，并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一）对饲料、饲料添加剂进行拆包、分装的；  　 （二）不依照本条例规定实行产品购销台账制度的；  　 （三）经营的饲料、饲料添加剂失效、霉变或者超过保质期的。  **第四十五条**　对本条例第二十八条规定的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不主动召回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召回，并监督生产企业对召回的产品予以无害化处理或者销毁；情节严重的，没收违法所得，并处应召回的产品货值金额1倍以上3倍以下罚款，可以由发证机关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生产企业对召回的产品不予以无害化处理或者销毁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代为销毁，所需费用由生产企业承担。  　 对本条例第二十八条规定的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不停止销售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停止销售；拒不停止销售的，没收违法所得，处1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经营，并通知工商行政管理部门，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第四十六条**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停止生产、经营，没收违法所得和违法生产、经营的产品，违法生产、经营的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在生产、经营过程中，以非饲料、非饲料添加剂冒充饲料、饲料添加剂或者以此种饲料、饲料添加剂冒充他种饲料、饲料添加剂的；  　 （二）生产、经营无产品质量标准或者不符合产品质量标准的饲料、饲料添加剂的；  　 （三）生产、经营的饲料、饲料添加剂与标签标示的内容不一致的。  　饲料、饲料添加剂生产企业有前款规定的行为，情节严重的，由发证机关吊销、撤销相关许可证明文件；饲料、饲料添加剂经营者有前款规定的行为，情节严重的，通知工商行政管理部门，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第四十七条**　养殖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没收违法使用的产品和非法添加物质，对单位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5000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使用未取得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新饲料、新饲料添加剂或者未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进口饲料、进口饲料添加剂的；  　 （二）使用无产品标签、无生产许可证、无产品质量标准、无产品质量检验合格证的饲料、饲料添加剂的；  　 （三）使用无产品批准文号的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的；  　 （四）在饲料或者动物饮用水中添加饲料添加剂，不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饲料添加剂安全使用规范的；  　 （五）使用自行配制的饲料，不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自行配制饲料使用规范的；  　 （六）使用限制使用的物质养殖动物，不遵守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的限制性规定的；  　 （七）在反刍动物饲料中添加乳和乳制品以外的动物源性成分的。  　 在饲料或者动物饮用水中添加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公布禁用的物质以及对人体具有直接或者潜在危害的其他物质，或者直接使用上述物质养殖动物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其对饲喂了违禁物质的动物进行无害化处理，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八条**　养殖者对外提供自行配制的饲料的，由县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责令改正，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    **第五章　附　则**  **第四十九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一）饲料原料，是指来源于动物、植物、微生物或者矿物质，用于加工制作饲料但不属于饲料添加剂的饲用物质。  　 （二）单一饲料，是指来源于一种动物、植物、微生物或者矿物质，用于饲料产品生产的饲料。  　 （三）添加剂预混合饲料，是指由两种（类）或者两种（类）以上营养性饲料添加剂为主，与载体或者稀释剂按照一定比例配制的饲料，包括复合预混合饲料、微量元素预混合饲料、维生素预混合饲料。  　 （四）浓缩饲料，是指主要由蛋白质、矿物质和饲料添加剂按照一定比例配制的饲料。  　 （五）配合饲料，是指根据养殖动物营养需要，将多种饲料原料和饲料添加剂按照一定比例配制的饲料。  　 （六）精料补充料，是指为补充草食动物的营养，将多种饲料原料和饲料添加剂按照一定比例配制的饲料。  　 （七） 营养性饲料添加剂，是指为补充饲料营养成分而掺入饲料中的少量或者微量物质，包括饲料级氨基酸、维生素、矿物质微量元素、酶制剂、非蛋白氮等。  　 （八）一般饲料添加剂，是指为保证或者改善饲料品质、提高饲料利用率而掺入饲料中的少量或者微量物质。  　 （九）药物饲料添加剂，是指为预防、治疗动物疾病而掺入载体或者稀释剂的兽药的预混合物质。  　 （十）许可证明文件，是指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饲料、饲料添加剂生产许可证，饲料添加剂、添加剂预混合饲料产品批准文号。  **第五十条**　药物饲料添加剂的管理，依照《兽药管理条例》的规定执行。  **第五十一条**　本条例自2012年5月1日起施行。 |